

합 의 서

피해자 홍길동 (600000 - 1000000)
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내자동 201-11 (우
110-798)

가해자 임격정 (500000 - 1000000)
 주소 :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24

피해자 홍길동은 1999. 12. 10. 10:00경 서울 ○○
구 ○○동 ○번지 앞 노상에서 가해자 임격정으로부터 8주간
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골절상의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임격
정을 ○○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데, 1999. 12. 13. 21:00
경 ○○에서 가해자의 형 임길동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
7,000,000원을 받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는
차후로 이 사건으로 민·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하지 않겠습니
다.

2025년 3월 6일

위 고 소 인 : 홍길동 (인)

○○경찰서장 귀하

※취급중인 사건을 당사자 및 피위임자가 합의를 하실 경우 사건취급 담당자에게 제출
하시고 피위임자는 합의서와 위임장 및 인감(개인)이 필요합니다.

